

학교법인 창성학원 정관

제정			(1963. 11. 16.)
개정	관리	1042.3 - 1129	(1974. 07. 03.)
개정	관리	1042.3 - 1635	(1975. 11. 08.)
개정	관리	1042.3 - 1676	(1975. 11. 18.)
개정	관리	1042.3 - 189	(1977. 02. 16.)
개정	관리	1042.3 - 931	(1977. 07. 09.)
개정	전행	1042.3 - 8	(1981. 01. 09.)
개정	전행	1042.3 - 47	(1982. 01. 26.)
개정	전행	1042.3 - 90	(1983. 02. 25.)
개정	전행	1042.3 - 15	(1984. 01. 11.)
개정	전행	25422 - 342	(1986. 07. 22.)
개정	전행	25422 - 44	(1987. 02. 11.)
개정	전행	25422 - 164	(1988. 02. 17.)
개정	전행	25422 - 328	(1988. 06. 24.)
개정	전행	25422 - 389	(1988. 08. 16.)
개정	전행	25423 - 164	(1989. 05. 04.)
개정	전행	25423 - 471	(1989. 12. 08.)
개정	전행	25423 - 170	(1990. 04. 24.)
개정	전행	25423 - 125	(1991. 02. 27.)
개정	전행	25422 - 434	(1991. 08. 21.)
개정	전행	25422 - 570	(1992. 11. 10.)
개정	전행	81422 - 353	(1994. 04. 25.)
개정	전행	81422 - 580	(1994. 07. 05.)
개정	전행	81422 - 139	(1995. 02. 27.)
개정	전행	81422 - 258	(1996. 03. 26.)
개정	전행	81422 - 878	(1996. 10. 15.)
개정	전행	81422 - 469	(1997. 06. 24.)
개정	전행	81422 - 639	(1997. 09. 22.)
개정	전행	81422 - 708	(1997. 10. 16.)
개정	전문	81422 - 190	(1998. 04. 24.)
개정	전문	81423 - 942	(1998. 11. 16.)
개정	전문	81423 - 189	(1999. 03. 03.)
개정	전문	81423 - 359	(1999. 05. 10.)
개정	전문	81423 - 391	(1999. 11. 23.)
개정	전문	81423 - 472	(2000. 05. 22.)
개정	전문	81423 - 1166	(2000. 11. 15.)
개정	전문	81423 - 176	(2001. 02. 21.)
개정	전문	81423 - 612	(2002. 05. 03.)

개정	전문 81422	-	211	(2003. 03. 03.)
개정	사학지원과	-	133	(2004. 03. 13.)
개정	전문대학정책과	-	1702	(2005. 12. 02.)
개정	전문대학정책과	-	691	(2007. 09. 04.)
개정	전문대학정책과	-	622	(2008. 02. 12.)
개정	전문대학지원과	-	3426	(2008. 09. 11.)
개정	전문대학정책과	-	4702	(2009. 10. 20.)
개정	법인사무국	-	90	(2010. 02. 23.)
개정	전문대학과	-	10154	(2011. 12. 30.)
개정	법인사무국	-	68-1	(2012. 02. 18.)
개정	전문대학과	-	3637	(2012. 05. 01.)
개정	법인사무국	-	497	(2012. 08. 22.)
개정	법인사무국	-	600	(2012. 12. 01.)
개정	법인사무국	-	272	(2013. 06. 28.)
개정	법인사무국	-	4	(2014. 01. 03.)
개정	법인사무국	-	98	(2014. 02. 07.)
개정	법인사무국	-	355	(2014. 08. 04.)
개정	법인사무국	-	317	(2016. 06. 14.)
개정	법인사무국	-	523	(2016. 09. 27.)
개정	법인사무국	-	72	(2017. 02. 02.)
개정	법인사무국	-	43	(2018. 01. 16.)
개정	법인사무국	-	462	(2020. 04. 01.)
개정	법인사무국	-	537	(2020. 04. 24.)
개정	법인사무국	-	903	(2020. 08. 12.)
개정	법인사무국	-	1131	(2020. 10. 19.)
개정	법인사무국	-	1324	(2020. 12. 17.)
개정	법인사무국	-	1379	(2023. 11. 18.)
개정	법인사무국	-	323	(2024. 02. 07.)
개정	법인사무국	-	1087	(2025. 06. 30.)
개정	법인사무국	-	1152	(2026. 08. 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교육과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창성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대덕대학교 <개정 2011.12.30.>
2. 대전중앙고등학교
3.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4. 대전중앙중학교
5. <삭제 2012.08.22.>
6.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 <개정 2008.02.12., 2012.08.22.>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 (장동 48번지)에 둔다.
<개정 2011.12.30.>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청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09.11., 2012.08.22.>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11.18>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04.>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9.04.>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2007.09.04.>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2007.09.04.>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2007.09.04.>

제16조(회의) 삭제 <2007.09.04.>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2007.09.04.>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7.09.04.>

2. 감사 2인

제18조의 2(상근임원) ①제18조 제1호의 이사 중 1인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상임이사)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9.04., 2011.12. 30.>

②상근임원은 제32조 수익사업의 원활한 경영과 수익을 증대하며,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한다. <개정 2011.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09.04., 2011.12.30.>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단, 중임가능 <개정 2001.02.21., 2013.06.28., 2023.11.18>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개정 2007.09.04., 2012.05.01.>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1.>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관할청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04., 2013.06. 28.>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개정 2005.12.02.>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8.02.12.>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정수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08.02.12.>

제20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안에 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20.04.01.>

④삭제 <2020.04.01.>

[본조 신설 2008.02.12.]

제20조의 5(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제20조의 4 제3항에 의하여 개방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와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회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대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1.12. 30., 2020.04.01.>

②위원회는 11명으로 하되,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덕대학교 평의위원회 : 3명 <개정 2011.12.30., 2012.08.22.>
2. 대전중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1명
3.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1명
4. 대전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1명
5. <삭제 2012.08.22.>
6. 법인에서 추천한 인사 : 5명

③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④삭제 <2020.04.01.>

[본조 신설 2008.02.12.]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이 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9.04.>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09.04.>

③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7.09.04.>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7.09.04.>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라야 하고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8. 02.12., 2013.06.28.>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2.12.>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2.12., 2023.11.18.>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제21조의2(임원 결격사유 등) ①「사립학교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2에 따라 당연히 퇴임된다. <신설 2023.11.18>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5.12.02.>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3.06.28.>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삭제> <개정 2011.12.30.>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9.04, 2011.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7.09.04, 2011.12.30.>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그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09.04.>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09.04.>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09. 04.>

제26조의 2(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사립학교법」 제72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8.>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개정 2007.09.04.>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9.04.>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18., 2024.02.07>

제30조의 2(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9.04., 2013.06.28., 2023.11.18., 2024.02.07>

제31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09.04.>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등) <개정 2004.03.13.>
3.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단, 사업현장은 업종에 따라 정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

(장동 48번지)에 둔다. <개정 2011.12.30.>

제35조(관리인) ①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5조의2(상근임원) 삭제 <2007.09.04.>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0.>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9.10.20.>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0.>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9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학기중 임기가 만료될 경우 해당 학기말까지를 임기만료일로 한다. 또한,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중임할 수 있고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09.04., 2016.06.14., 2020.04.01., 2023.11.18>

②학교의 장이 재임기간 중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신설 2020.12.17.>

③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

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④학교의 장 이외의 중·고등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7.09.04., 2020.04.01.>

⑤대학교육기관의 팀장급(팀장보 포함) 이상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9.10.20., 2013.06.28., 2020.04.01., 2020.10.19.>

⑥제1항 내지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⑦「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관할청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3.11.18.><개정 2024.02.07>

제39조의2 (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정관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47조 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2016.09.27., 2020.08.12.>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4년

라. 강사 : 1년

2. 급 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의거 계약 임용되는 교원의 계약조건은 정관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한다. <신설 2009.10.20.>

제39조의 3(신규채용 등) ①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 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0.20.>

③대덕대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 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이사장은 대덕대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 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11.12.30.>

⑥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 4(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0.>

1. 교 수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4년
4. <삭제 2012.12.01.>

②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 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11.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총장은 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1.12.30.>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 평가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총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39조의 5(특별채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08.12.>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 예정 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근무실적 또는 기타 자질이 우수하여 학교에 꼭 필요한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타 우수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

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02.12.>

제39조의 6(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대학교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②위원회는 정년보장교원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고,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6.06.14., 2016.09.27.>

④정년보장 임용 교원의 정수 범위는 교원 정원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08.12.>

제39조의 7(비전임 교원) 정관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4의 교원 외에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등의 비전임 교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0., 2011. 12.30., 2012.08.22., 2020.04.01., 2020.08.12., 2020.10.19.>

제39조의 8(대학 교원의 소속 학과 변경)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의 소속 학과 변경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신설 2020.04.01.>

제39조의 9(기간제 교원) ①중.고등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9.04., 2020.10.19.>

1. 교원이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임용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④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9.04.>

제39조의 10(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및 전형결과 공개) ①중·고등학교의 교원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개정 2007.09.04., 2020.04.01.>

②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04.>

③제2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9.04.>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에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5.22., 2023.11.1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개정 2020.04.01.>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8.02.12., 2012.08.22., 2014.02.01., 2020.04.01.>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23.11.18.>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본인과 동 사유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개정 2004.03.13.>
10.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학교, 학급, 학과의 개폐(계열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퇴직 및 취업준비를 하고자 할 때 <신설 1999.11.23.>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00.05.22.><개정 2020.04.01.>

②재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학생지도에 능숙하며, 기타 여러모로 장래성이 있고 영구 근속성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외국시찰 및 일정한 기간 연구생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0.05.22.>
7. 제4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신설 1999.11.23.>
11. 제40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05.22.>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제41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그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1999.11.23.>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3.06.28.>

②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3. 13.>

③제4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9.11.23.>

제44조(직위의 해제)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 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 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

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8.12.>

제44조의2(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학교 내에서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의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전문신설 2020.08.12.>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6.28.>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학교, 학급, 학과의 개폐(계열 및 전공분야 개폐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폐직이 되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1999.11. 23.>

②제1항에 따른 학과의 개폐(학과 구조조정)는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신설 2020.08.12.>

③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8.12.>

④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2020.08.12.>

제4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대학교 총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47조의2(명예퇴직) ①각급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 교원 중 1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조기희망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조기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05.01., 2020.04.01.>

제47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9.04.>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9.04.>
2. 중.고등학교 교원의 보직을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9.04.>
3.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9.04.>
4. 고등학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관 제39조의 4 제3항 및 제6항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9. 04.>

②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용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 2의 제4호를, 정관 제3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 39조의 4의 제4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04.>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7.09.04.>

②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8.09.11., 2011.12.30.>

③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단,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0.20., 2011.12.30., 2014.08.04.>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2.01., 2014.08.04.>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위원장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11.23., 2020.08.12., 2023.11.18., 2024.02.07., 2026.08.05>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04.01.>

마.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단,「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 한함.) <신설 2023.11.18>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23.11.18.>

2. 외부위원은 본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신설 2020.04.01.>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 마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3.11.18>

4.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3.11.18>

제56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관련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신설 2020.04.01.>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2(위원의 기피)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 양과 종류를 기재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 23., 개정 2011.12.30.>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 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4.01.>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준용)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04.01.>

제3절 사무직원

제65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관리운영직 및 계약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08.0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관리운영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8.04.>
-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6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채용, 승진(근속승진 포함), 승급, 대우직원,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0.20., 2020.04.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계약직원 포함)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0.04.01.>

제67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8>

제68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시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하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8>

제69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0조의 2(명예퇴직) ①본 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정년퇴직일 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조기희망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조기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05.01.><개정 2020.04.01.>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2조(법인사무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처와 관리처를 두며, 그 분장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04.24.]

제2절 대학교

제73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10.20., 개정 2011.12.30.>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10.20.>

③대학교에는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0.20., 개정 2011.12.30.>

④총장 및 부총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총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9.10.20., 개정 2011.12.30.>

제74조(하부조직) ①대학 본부에는 교무처, 입학처, 학생취업처, 기획처, 행정처를 두며, 총장 직속으로 인권센터, 산학협력단, 국제협력단과 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0.02.23,

2011.12.30, 2012.02. 18, 2013.06.28, 2014.02.01., 2017.02.02., 2020.04.01., 2024.02.07., 2025.06.30>

② <삭제2023.11.18>

③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인권센터장, 산학협력단장, 국제협력 단장,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처장은 4급이상의 일반직원 또는 4급상당 이상 경력의 계약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02.23, 2011.12.30, 2013.06.28, 2014.02.01, 2014.08.04, 2017.02.02., 2020.04.01., 2024.02.07., 2025.06.30., 2026.08.05>

④각 처·단 등에는 하부조직으로 센터, 팀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하부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되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17.02.02., 2024.02.07., 2026.08.05>

⑤제3항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03.03, 2017.02.02.>

[전문개정 2012.08.22.]

제75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부총장 직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04.01., 2024.02.07>

1. 부속기관 : 도서관, 평생교육원, 어린이집, 대덕군사기술연구소, 생활관등 <개정 2010.02.23, 2011.12.30, 2012.08.22., 2017.02.02., 2018.01.16., 2020.04.01., 2020.08.12., 2023.11.18., 2024.02.07>

②각 부속기관에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09.11., 2017.02.02.>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10.20.>

④부속기관에는 필요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09.11, 2017.02.02.>

⑤제4항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2.02.>

⑥제1항의 부속기관 설치 및 폐지에 대하여는 대학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하되,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20., 2011.12.30.>

제75조의2(부속유치원) 삭제 <2003.03.03.>

제76조(정보문헌센터) 삭제 <2003.03.03.>

제76조의2(정보통신센터) 삭제 <2003.03.03.>

제76조의3(부설 평생교육원) 삭제 <2003.03.03.>

제76조의4(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삭제 <2003.03.03.>

제3절 고등학교

제77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의2 삭제

제78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도서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도서관에는 수서와 도서열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교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4절 중학교

제80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0조의2 삭제

제81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유치원

제81조(유치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원감 1인을 둘 수 있다.

②원장은 원장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보한다.

③원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1조의 2(하부조직)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고 서무과장 또는 서무과장보는 일반직원 중에서 겸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19.>

제6절 정원

제82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 2-1, 별표2-2와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삭제)과 같다. <개정 2012.08.22.>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8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83조의 2(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7호는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8>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6.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2.12.>

제83조의 3(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고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12.>

제83조의 4(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개정 2008.02.12.>

제84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당해 학교교원 중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는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5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200명 이하 학교의 위원 연임 제한 여부는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제86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교원위원의 자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7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무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보다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88조(위원의 퇴직)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학부모위원이 당해 학교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나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8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0조(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들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1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조직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93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제4항에 의거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 중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4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중등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96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7조(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9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101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설치) 법인 정관 제20조의 5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대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두며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신설 2020.04.01.>

제10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개방임원”이라 함은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선임 대상자 추천을 의뢰 받은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를 말한다.<신설 2020.04.01.>

제103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법인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

1.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
2.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 추천

<신설 2020.04.01.>

제104조(구성 및 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며, 그 구

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중 3인
2. 대전중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
3.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
4. 대전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
5.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5인<개정 2023.11.18>

②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은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1항의 각 추천주체별로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은 각 추천 주체의 추천을 받은 후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최초 소집한다. 단, 소집 및 개최가 지연될 경우 개방이사추천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위원장이 소집 하여야한다. <신설 2020.04.01.><개정 2023.11.18.>

제105조(임기) ①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개방임원 선임이 확정되는 날로 종료한다.<신설 2020.04.01.>

제106조(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20.04.01.>

제107조(개방임원의 자격) 개방임원은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사립학교법」제22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설 2020.04.01.>

제108조(개방임원의 추천) ① 법인 이사장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감사는 단수로 선정하여 법인에 추천한다.<신설 2020.04.01.>

제109조(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법인의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신설 2020.04.01.>

제110조(의결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신설 2020.04.01.>

제111조(회의록)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신설 2020.04.01.>

제112조(비밀유지) 추천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04.01.>

제1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0.04.01.>

제11장 대학평의위원회

제114조(대학평의위원회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12.30.>

제115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8.>

1. 교원 6 명
2. 직원 2 명
3. 조교 1명 <신설 2023.11.18.>
4. 학생 1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16조(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신설2023.11.18.>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외부 인사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117조(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118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9조(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0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12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13.06. 28.>

제12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겸 이사장	성 주 련	1911. 6. 5	4	충남 대전시 중구 선화동 98
이 사	오 재 순	1901. 1. 14	4	충남 대전시 동구 판암동 605
이 사	이 은 경	1908. 6. 25	2	충남 대전시 중구 선화동 98
이 사	성 주 열	1917. 6. 22	2	충남 대덕군 탄동면 장동리 149
이 사	성 주 관	1923. 2. 25	2	충남 대전시 중구 선화동 98번지
감 사	성 주 호	1927. 2. 18	1	충남 대전시 중구 선화동 98
감 사	이 갑	1890. 8. 14	2	충남 대전시 중구 선화동 98

제124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2023.11.18>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기 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정년초과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6.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7. (당연직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로 재임 중인 이사는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8. (법인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법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정년보장교원의 경과조치) 정관 제39조 제2항의 정년보장교원은 '97.4.13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1997.4.12일을 기준하여,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충남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덕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제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7호의 개

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정관 제39조 제2항의 개정 이전에 임명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또한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법인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법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신규교원의 계약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약제 임용은 2002년 3월 1일 임용자로부터 적용한다.
3. (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 3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4.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 3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3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직제와 관련된 부서의 신설 및 폐지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직제와 관련된 부서의 신설 및 폐지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후속 조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02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9월 4일부터 적용한다.
2. (학교의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개정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정관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의 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2007.9.4)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제39조의2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대학교 명칭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정관 시행 당시 “대덕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덕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3. (대학 직제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감사 임기의 경과규정) 본 정관 변경사항은 시행일 이후 취임하는 감사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관할청 명칭 변경 경과조치) 본 정관의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부” 및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교의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정관에 불구하고 현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정관에 의한다.
3. (용어 관련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으로 학교법인 창성학원 정관 및 자체 규정의 임용 관련 용어(임면 등)는 ‘임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4.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대덕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법인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법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학교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의 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직제와 관련된 부서의 신설 및 폐지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후속 조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직제와 관련된 부서의 신설 및 폐지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후속 조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08.22., 2014.02.01.>

법인 일반직원 정원표

총 계	12명
일반직계	12명
2급(이사관)	1명
3급(부이사관)	1명
4급(서기관)	1명
5급(사무관)	2명
6급(주사)	2명
7급(주사보)	2명
8급(서기)	2명
9급(서기보)	1명

[별표2-1] <개정 2011.12.30., 2012.08.22., 2013.06.28., 2014.02.01.>

대덕대학교 일반직 정원표

총 계	70명
행정직계	60명
3급(부이사관)	2명
4급(서기관)	4명
5급(사무관)	7명
6급(주사)	11명
7급(주사보)	14명
8급(서기)	14명
9급(서기보)	8명
관리운영직계	10명
6급(기능장)	2명
7급(기능원)	2명
8급(기능원)	3명
9급(기능원)	3명

[별표2-2] <개정 2011.12.30., 2012.08.22., 2014.03.01.>

대덕대학교 부속유치원 일반직 정원표

총 계	5명
행정직계	5명
7급 (주사보)	2명
9급 (서기보)	3명

<이하삭제>

[별표3] <개정 2011.12.30., 2012.08.22., 2014.03.01.>

대전중앙고등학교 일반직 정원표

총 계	5명
행정직계	3명
5급 (사무관)	1명
6급 (주사)	0명
7급 (주사보)	1명
8급 (서기)	1명
관리운영직계	2명
9급 (기능원)	2명

<이하삭제>

[별표4] <개정 2011.12.30., 2012.08.22., 2014.03.01.>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직 정원표

총 계	6명
행정직계	4명
5급 (사무관)	1명
6급 (주사)	0명
7급 (주사보)	1명
8급 (서기)	2명
9급 (서기보)	0명
관리운영직계	2명
9급 (기능원)	2명

<이하삭제>

[별표5] <개정 2011.12.30., 2012.08.22. 2014.03.01.>

대전중앙중학교 일반직 정원표

총 계	3명
행정직계	2명
6급 (주사)	1명
7급 (주사보)	0명
8급 (서기)	1명
관리운영직계	1명
9급 (기능원)	1명

<이하삭제>

[별표6] <개정 2011.12.30., 삭제2012.08.22.>

대전중앙여자중학교 일반직 정원표

총 계 11명

일반직계 5명

6급 (주 사) 1명

7급 (부 주 사) 2명

8급 (서 기) 2명

기능직계 6명

8등급 (기 능 직) 1명

9등급 (“) 5명

<아하삭제>